

시공권 포기각서

㈜데일리펀딩대부 귀중

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22-17 (이하 ""본건 사업주지")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(이하"본건 사업")의 시공자로서,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은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.

다 음

1. 당사는 대출약정상의 부도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, 또는 기타이유 등으로 본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대주가 판단하여 이를 통지받은 경우, 즉시 본거 사업 관련 일체의 사업시공권 및 일체의 유치권 등을 포기하고, 동시에 이를 대주가 지정하는 자(이하"대체시공사")에게 완전히 양도할 것입니다.
2. 당사가 포기 및 양도하는 사업시행권은 이래 각 호의 사항과 같습니다.
 - 가. 당사가 본건 사업장 건축물 완성을 위하여 공사를 수행하고,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률상, 계약상, 인허가상 일체의 권리
 - 나. 본건 사업부지 및 본건 사업상 건축물(건축중인 건물 및 공작물 포함)에 대한 일체의 유치권
 - 다. 기타 대출약정 및 제반 금융계약상의 제반 시공자로서의 권리
 - 라. 기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가지는 계약상, 법률상, 인허가상의 일체의 권리
3. 당사는 위 제 1 항과 관련하여, 일체의 민·형사상의 이의나 일체의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, 대체시공사가 본건사업 시공권을 정상적으로 양수할 수 있도록 시공회사 명의변경 등 행정상 필요한 모든 조치에 협조할 것입니다.
4. 만약 당사가 위 제 1 항 내지 제 3 항을 이행하지 않아 대주 및 대체시공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전액을 배상할 것입니다.
5. 본 각서에 사용된 모든 용어는, 별도로 정의되지 않는 한, 대출약정상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.

2017년 11 월 7 일

포기인 겸 양도인

경기도

대표이사

